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8. 27.(목) 10:00

##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7호
- 나. 제 출 자 : 강수정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## 2. 제안이유

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<sup>1)</sup>가 주민에게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(안 제4조)
- 마.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 - 「병역법」 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
  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    - 제2조의 2(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)
    - 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)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8. 19. ~ 8. 24.

---

1) 병역명문가 :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
-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
-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사항을 명시하였음.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이는 등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 현재 우리 구는 16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.
-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관내 시설,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,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  
참고로,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서울시에는 918개의 병역명문가가 있음.

## 관계법령

### □ 병역법

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(宣揚)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### □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(병무청훈령 제564호)

제2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)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.

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복무를 마쳤거나,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
  2.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  3.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‘한국광복군’으로 활동한 사람
-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·입영 기피,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 
<개정 2016.11.30.> [본조신설 2013.12.11]

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< ’ 08.12.12 >)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’ 08.12.12, ’ 10.5.4, ’ 12.2.1, ’ 12.11.21>